

제197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11.26)

#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 창 환]

#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3 ~ 99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2013 ~ 102	거창군 삼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	8
2013 ~ 103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	18
2013 ~ 104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24

#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3. 11. 20.

## 2. 제안이유

- 외식업소,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계약재배 또는 기획 생산자 조직육성으로 지역농산물의 다양성 확보
- 순회수집, 선별, 소포장 및 유통·마케팅 조직을 통해 농업인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제값에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유통·마케팅 Two-Track 고도화 전략을 완성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푸드종합센터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소재 거점APC 부지내

다. 시설현황 : 연면적 712.5m<sup>2</sup> (지상2층)

계	1층				2층
	전시판매장	저온저장	선별장	화장실	
712.5m <sup>2</sup>	180m <sup>2</sup> 판매대, 쇼케이스	107.8m <sup>2</sup> (4실)	162.2m <sup>2</sup> 컨베어, 포장기, 잡곡도정기	82.5m <sup>2</sup>	180m <sup>2</sup> 사무실, 기타

○ 주요기능

- 농산물 순회수집, 선별, 소분, 저온저장 유통시설
-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시설, 소규모 잡곡류 도정시설

라. 위탁대상 업무

- 시설 : 거창푸드종합센터 토지·건물과 기계 장비 운영 및 그 부대시설 유지·관리

○ 운영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서 위임 또는 권장하는 사업
- 중·소·고령농 생산 농산물 순회수집
- 선별, 소포장, 저온저장, 유통 등 수탁판매
- 전시판매장 운영
- 거창푸드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 거창푸드 생산자 조직화 및 사용자 조직화
- 거창푸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및 E-비즈니스에 관한 사항
- 꾸러미사업 추진 및 지원
- 전략육성 품목 기획생산 지원

마.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바. 위탁자격 :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사. 위탁운영 방식

- 생산, 수집, 유통, 판매 등 업무 일체 위탁

아. 소요예산(정상화 지원)

- 1년차 : 150백만원 (운영자금 50백만원, 예상결손 100백만원)
- 2~3년차 : 100백만원 (예상결손)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63호]
  - 민간위탁 기준 제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공개모집, 인력,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 선정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9조 (위탁운영)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근거 제시

나. 예산조치 : 2014년 예산확보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푸드종합센터를 범 군민적인 자율 참여와 지역농산물 Two-Track 생산, 수집, 유통, 판매 마케팅 구심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2항에 의거 거창푸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

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 제4항이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시행일 : 2011.10.04)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2. 유통 및 공급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
3. 거창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4. 위원회, 거창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 및 학교 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 ⑥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제정) 1997. 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 01.14 조례 제1878호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 하도록 한다.

#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강창남, 김재권, 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2. 제정이유

- 쌈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쌈지공원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군수는 쌈지공원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군수는 관리자에게 쌈지공원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지표를 제공토록 함(안 제5조)
- 마. 쌈지공원 관리우수공원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8조의 2
-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2014년 추경 반영계획 15,000천원

다. 합 의 : 산림녹지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11. 15. ~ 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생략(50,000천원 이하)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썸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데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썸지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썸지공원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쌈지공원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관리자에게 쌈지공원 관리항목 및 관리 세부지표를 제공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쌈지공원 관리우수공원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쌈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4조 (보조대상)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5조 (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강창남, 김재권, 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2. 제정이유

-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폐농기계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폐농기계 일제수거기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나. 예산조치 : 2014년 추경 반영계획
- 다. 합 의 : 농업기술센터와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11. 15. ~ 11.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생략(50,000천원 이하)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군내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 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폐농기계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는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5조**에서는 폐농기계 일제수거기간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군내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공개모집, 인력,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 선정

# 거창군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강철우, 이성복, 안철우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 2. 제정이유

-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함(안 제2조)
  -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나.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함(안 제3조)
- 다.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함(안 제4조)
- 라. 헌옷 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함(안 제5조)

마. 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 지정 및 운영·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규정함(안 제6조)

<운영·관리자 지정된 자의 업무>

-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 위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14년 추경 반영계획 30,000천원

다. 합 의 : 녹색환경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11. 15. ~ 11. 20.
  - (나) 예고결과
    - 한국폐자원재활용협의회 경남 거창군지회장 의견
    - 영세한 행상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반대의견
- (4) 비용추계서 : 생략(50,000천원 이하)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데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 **안 제3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 **안 제5조**에서는 헌옷 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헌옷 수거함 관라운영자 지정 및 운영관리자 업무 등에 관한 규정함.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재활용을 위한 헌옷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정하여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는데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 「거창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의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